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정수익자가 부정이익 등에 대한 환수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고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전액 면제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제재부가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제재부가금의 면제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26호, 2024. 3. 26. 공포, 2024. 9.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진신고를 구분하여, 제재부가금 면제를 감면으로 조정(안 제5조제1항,

별표 1)

- 1) 행정청이 부정청구 등에 따른 환수를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50을 감경

2) 다만, 행정청의 부정수익자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제재부가금을 면제

나. 보상금의 산정기준 등 정비(안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30조, 별표 2, 별표 3)

‘부정청구 등 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신고’ 간에 보상금 지급비율, 감액근거 및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법령 체계를 서로 일치시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되도록 기존 보상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0조제2항·제3항에”를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2조 중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2항 후단 중 “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제19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26조 중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으로 한다.

제30조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별표 1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행정청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환수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기 전(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재 부가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요구·조사 전까지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제재 부가금을 면제한다.

별표 1 제5호(중전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른 법률”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중전의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른 법률”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로 한다.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연 락 처	(044) 200 - 7644